

건축법 및 소방법 개정내용

건축법 시행령(1988. 2. 24) 내용

관련조항	개정전	개정후
제 2 조 제 8 호	“준불연재료”라 함은 불연재료에 준하는 방화성능을 가진 건축재료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.	“준불연재료”라 함은 불연재료에 준하는 방화성능을 가진 건축재료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것을 말한다.
제 2 조 제 9 호	“난연재료”라 함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건축재료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.	“난연재료”라 함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건축재료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것을 말한다.
제 7 조 제 1 호	[건축허가에 관한 사전승인] 본문생략 1. 31 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 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. 다만, 공동주택 및 공장을 제외한다.	1. 21 층 이상이거나 ~
제 11 조의 2 (신설)		(건축물의 유지관리) ①법 제 7 조의 3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유지관리 상태에 관한 조사결과의 제출대상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건축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조사하여 건축물의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30일 이내에 이를 시장·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유지관리 상태에 관한 조사의 구체적인 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.
제 16 조	[구조안전의 확인] 본문생략 1. 연면적이 1 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~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것.	[구조안전의 확인] 법 제 10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안전의 확인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 1. 연면적이 1 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~ 구조안전을 확인하되,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자진에 대한 안전 여부의 확인을 포함할 것.

관련 조항	개정전	개정후
		<p>가. 6층이상의 건축물과 제7조제1호, 제2호 및 제4호의1에 해당하는 건축물</p> <p>나. 지진구역에 관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 2의 지역내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종합병원, 병원, 발전소, 공공업무시설, 통신촬영시설중 방송국, 전신전화국,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관람집회시설 및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</p>
제46조	<p>[대규모 건축물의 대지안에 있어서의 통로]</p> <p>① “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”에는</p>	<p>① “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”에는 그 주위(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는 부분을 제외한다)에 폭 3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.</p>
제101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다목	<p>나.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의 바닥은 이를 둘러싼 난간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면적(공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)이 바닥의 외곽선으로부터 그 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이르는 수직면(옥내면을 제외한다)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한다. 다만, 공동주택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의 바닥은 외벽으로부터 1.2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한다.</p>	<p>나.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노대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(이하 이 조에서 “노대등”이라 한다)의 바닥은 이를 둘러싼 난간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면적(공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)이 바닥의 외곽선으로부터 그 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이르는 수직면(옥내면을 제외한다)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한다.</p> <p>다. 공동주택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등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(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)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.5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. (신설)</p>

[부표]

건축물의 용도 분류

① 단독주택

1. 단독주택
2. 다중주택 (학생 또는 직장인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)
3. 공관

② 공동주택

1. 연립주택
2. 아파트
3. 다세대주택 (연면적 330 제곱미터 이하이고 3 층이하로서 2 세대 이상인 것)

⑪ 업무시설

1. 공공업무시설 :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기타 이에 준하는 건축물로서 근린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.
2. 일반업무시설 : 금융업소, 사무소, 신문사, 오피스텔 (업무를 주로하는 시설의 각 개별 실에 일부 주거를 할 수 있는 것)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.

⑯ 운수시설

1. 시외버스정류장 (고속버스 정류장을 포함 한다.)
2. 화물자동차 정류장
3. 철도 역사

4. 공항시설

5. 해운시설 : 항만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

㉑ 자동차 관련 시설

1. 차고 (시내버스 및 택시등의 차고를 포함한다)
2. 세차장
3. 폐차장
4. 자동차 검사장
5. 자동차 매매장
6. 자동차 부속상
7. 자동차계 강습소

㉒ 동물 관련시설

1. 축사 (양잠, 양봉, 양어시설등을 포함한다)
2. 부화장
3. 가축시장
4. 도축장
5. 동물검역소

㉓ 분뇨, 쓰레기처리시설 (산업폐기물을 처리시설을 포함한다.)

소방법 시행규칙 개정 (1988.3.24) 내용

관련 조항	개정전	개정후
제3조 제2항 (단서조항 신설)	5. 소방시설의 시방서 및 설계도면	5. 소방시설의 시방서 및 설계도면. 다만,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(공동주택을 제외한다) 과 소방시설의 설치, 유지 및 위험물 제조소등 시설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 별표15에 규정한 현저하게 소화가 곤란한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소방설비 기술사가 작성 설계한 것이어야 한다.

관련 조항	개정전	개정후
제 8조	<p>(방염성능의 기준) 영 제 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물품의 방염성능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잔염시간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카페트에 있어서는 20 초이내 나. 얇은 포(1제곱미터의 중량이 450 그램 이하의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있어서는 3 초이내 다. 합판 및 섬유판(이하 “합판등”이라 한다)에 있어서는 10 초 이내 2. 잔진시간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얇은 포에 있어서는 5 초이내 나. 두꺼운 포에 있어서는 20 초이내 다. 합판등에 있어서는 30 초이내 3. 탄화면적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얇은 포에 있어서는 30제곱센티미터 이내 나. 두꺼운 포에 있어서는 40제곱센티미터 이내 다. 합판등에 있어서는 50제곱센티미터 이내 4. 탄화 길이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카페트에 있어서는 10 센티미터 이내 나.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20센티미터 이내 5. 접염회수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3회 	<p>(방염성능의 기준) 영 제 11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카페트 기타물품의 방염성능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카페트의 경우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잔염시간은 20 초이내 나. 탄화길이는 10 센티미터 이내 2. 얇은 포(1제곱미터의 중량이 450 그램 이하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)의 경우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잔염시간은 3 초이내 나. 잔진시간은 5 초이내 다. 탄화면적은 30 제곱센티미터 이내 라. 탄화길이는 20 센티미터 이내 마. 접염회수(용융하는 물품에 한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3회이상 3. 두꺼운 포(1제곱미터의 중량이 450 그램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)의 경우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잔염시간은 5 초이내 나. 잔진시간은 20 초이내 다. 탄화면적은 40 제곱미터 이내 라. 탄화길이는 20 센티미터 이내 마. 접염회수는 3 회이상 4. 합판 및 섬유판(이하 “합판등”이라 한다)의 경우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잔염시간은 10 초이내 나. 잔진시간은 30초이내 다. 탄화면적은 50 제곱센티미터 이내 라. 탄화길이는 20 센티미터 이내 5. 침구류의 경우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탄화길이는 최대 7센티미터 이내, 평균 5센티미터 이내 나. 접염회수는 3 회이상
제 13조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카페트, 합판 및 섬유판을 제외한 물품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“얇은 포”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카페트, 합판등 및 침구류를 제외한 물품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“얇은 포”

관련 조항	개정전	개정후
	<p>라. (1) 본문생략</p> <p>(5) “엷은 포”</p> <p>2. 다. (2) 본문생략</p> <p>다만, 조성섬유가 모 100 퍼센트(파일이 있는 카페트의 경우에는 파일을 조성하는 섬유가 모 100 퍼센트)인 시험체중 열에 의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것은…….</p> <p>4. 나. “한국공업규격 디(K.S.D) 3703에”</p> <p>※ 이하 생략</p>	<p>라. (1) 시험체는 시험체 받침틀 안에 느슨하지 아니하게 고정할 것.</p> <p>(5) “얇은 포”</p> <p>2. 다. (2) 본문 변동없음</p> <p>다만, 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…….</p> <p>4. 나. “한국공업규격 (K.S) D3702에”</p> <p>※ 이하 생략</p>